발행물등록번호
KISA-2016-0053

개인정보 보호
상담 사례집

2017. 1

KISA 한국인터넷진흥원

발행물등록번호
KISA-2016-0053

개인정보 보호
상담 사례집

2017. 1

KISA 한국인터넷진흥원

일러두기

본 사례집에 수록된 개인정보 보호 상담 사례의 법리 적용 및 결론 등은 세부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령명 약어

본 사례집에서는 주요 법령명을 아래의 약어로 표기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4107호, 2016.3.29., 일부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4080호, 2016.3.22., 일부개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보호법 주요 개정 현황 안내

• 주민등록번호 처리제한[시행 2014.8.7.]

–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실시, 주민등록번호 유출시 과징금 부과

• 주민등록번호 보호조치 강화[시행 2016. 1. 1.]

– 주민등록번호 보관시 암호화 조치 의무화

• 개인정보 보호 책임성 강화[시행 2016. 7. 25.]

– 법정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개인정보 범죄 처벌 강화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능 강화

•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강화 등[시행 2016. 9. 30.]

– 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 의무화,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 강화

– 민감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의무화

CONTENTS

제1장 개인정보 침해 피해구제 개요 5

1.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소개 6
   가.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설립 근거 및 조사 권한 6
   나. 개인정보 침해신고 및 상담 업무처리 절차 18

2. 개인정보 침해 신고 · 상담 접수 및 조치 현황 21
   가. 개인정보침해신고 및 상담 접수 개요 21
   나. 개인정보침해신고 접수 유형별 분석 21

제2장 개인정보 침해 상담 사례 23

1. 개인정보의 정의 24
2.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27
3.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 제공 제한 31
4.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의 고지 34
5. 개인정보의 파기 38
6.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42
7. 적용의 일부 제외 44
8.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등 47

제3장 개인정보 침해 상담 Q&A 51

참고 개인정보 보호 관련 행정 해석례 자료 69

개인정보 보호
상담 사례집

제1장
개인정보 침해 피해구제 개요

1.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소개
2. 개인정보 침해 신고 · 상담 접수 및 조치 현황

제 1 장

개인정보 침해 피해구제 개요

1.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소개

가.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설립 근거 및 조사 권한

개인정보 침해신고 제도배경

개인정보는 현대사회에서 많은 분야에 걸쳐 그 활용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에 따른 개인정보 노출, 유출로 인한 침해 위험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금융권, 온라인 쇼핑몰, 게임사 등에서 해킹으로 인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유출된 개인정보를 통해 명의도용, 피싱, 신분증 위조 등 추가 피해도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되어 국민의 불안감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 신고 · 상담을 접수하여 사실조사 및 행정절차를 통해 고충해결 및 피해구제를 목적으로 2000.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소되어 연간 15만여건의 개인정보침해 신고 · 상담 건을 처리하고 있다.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는 일반 국민 및 공공기관, 사업자의 개인정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히 해결하고 개인정보침해 신고 및 상담의 접수 · 처리를 위하여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내 유일의 전문기관이다.

조직구성을 살펴보면, 한국인터넷진흥원 내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와 118상담센터를 두어 사실조사(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와 상담(118상담센터)을 이원화하여 업무의 신속성 제고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 있다.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의 인력은 개인정보와 관련한 업무를 오랫동안 다뤄온 전문 조사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변호사, 법학교수,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어있는 "민원처리심사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여 조사의 공정성이 담보되도록 하고 있다.

개인정보 침해신고의 의의 및 침해 구제의 필요성

「개인정보 보호법」은 제2조에서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한다고 하여 개인정보의 정의를 내리고 있다.

'개인정보의 침해'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기하지 않거나 법적 근거 없이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등, 개인정보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체의 작위 · 부작위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개인정보침해신고'는 법령을 위반한 누군가의 행위로 말미암아 개인정보를 침해당한 사람이 그 사실을 진술하면서 고충처리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침해신고'의 개념은 넓게는 신고인이 입은 고충의 해결, 피해보상, 위법사실 통보,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 요구 등을 모두 포함하나, 좁게는 위법사실 통보 및 행정처분 요구만을 포함한다.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피해는 개인의 사생활이나 경제 · 사회활동과 직접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동일 사건에 있어 피해자가 매우 다수이기 때문에 피해 파급효과가 빠르다. 특히 대부분의 개인정보 침해 · 유출은 또다시 명의도용이나 스팸광고, 피싱, 금전적 피해와 같은 이른바 '2차 피해'를 야기하므로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구제 활동이 요구된다.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조사권한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는 소관 업무를 실효성 있게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에 관한 행정적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행정자치부장관 및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각각「개인정보 보호법」및「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자료제출 요구권 및 검사권을 위탁 부여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07호, 2016.3.29., 일부개정]

제62조(침해 사실의 신고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신고의 접수 · 상담
2. 사실의 조사 · 확인 및 관계자의 의견 청취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에 딸린 업무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제3항제2호의 사실 조사 · 확인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국가공무원법」제32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63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관계 물품 · 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2. 이 법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3. 그밖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인정보처리자 및 해당 법 위반사실과 관련한 관계인의 사무소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상황,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7.24.〉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처리자 및 해당 법 위반사실과 관련한 관계인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④ 보호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구를 받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⑤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거나 수집한 서류 · 자료 등을 이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7.24.〉

⑥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료의 제출 등을 받은 경우나 수집한 자료 등을 전자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 영업비밀 등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제도적 · 기술적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7.24.〉

⑦ 행정자치부장관은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예방과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신설 2015.7.24.〉

제68조(권한의 위임 ·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은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해당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시행령 제59조(침해 사실의 신고 등)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 침해 사실 신고의 접수 ·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기관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시행령 제60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① 법 제6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개인정보 유출 등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는 사건 · 사고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 및 검사 등을 위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장에게 기술적인 사항을 자문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12.30〉

시행령 제62조(권한의 위탁)

① 삭제 〈2015.12.30.〉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대체가입수단 제공의 지원에 관한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12.30.〉

1. 「전자정부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 한국인터넷진흥원
3. 대체가입수단의 개발 · 제공 · 관리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술적 · 재정적 능력과 설비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어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법인 · 기관 · 단체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12.30.〉

1. 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 · 홍보
2. 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관계 전문가의 육성 및 영향평가 기준의 개발
3.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열람 요구의 접수 및 처리
4. 법 제63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법 제62조에 따라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의 접수 · 처리 및 상담과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
5. 제37조제2항에 따른 평가기관 지정신청서의 접수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신고 사항의 접수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30.〉

시행령 제6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행정자치부장관(제62조제3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5.12.30.〉

1.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대체 방법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 제반 조치 마련 및 지원에 관한 사무
2. 법 제3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
3.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무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45조 및 제47조에 따른 개인정보 분쟁 조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8.6.]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0조(개인정보 침해 사실의 신고 처리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로 인하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신고의 접수 · 상담
2. 개인정보 침해 신고에 대한 사실 조사 · 확인 및 관계자의 의견 청취
3.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사실 안내 및 시정 유도
4. 사실 조사 결과가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이익 침해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신고의 종결 처리
5. 법 제43조에 따른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안내 등을 통한 고충 해소 지원

제52조(한국인터넷진흥원)

① 정부는 정보통신망의 고도화(정보통신망의 구축 · 개선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와 안전한 이용 촉진 및 방송통신과 관련한 국제협력 · 국외진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09.4.22.〉

② 인터넷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09.4.22.〉

③ 인터넷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09.4.22., 2012.2.17., 2013.3.23., 2014.11.19., 2015.6.22.〉

1.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보호, 방송통신과 관련한 국제협력 · 국외진출 등을 위한 법 · 정책 및 제도의 조사 · 연구
2.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보호와 관련한 통계의 조사 · 분석
3. 정보통신망의 이용에 따른 역기능 분석 및 대책 연구
4.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보호를 위한 홍보 및 교육 · 훈련
5. 정보통신망의 정보보호 및 인터넷주소자원 관련 기술 개발 및 표준화
6. 정보보호산업 정책 지원 및 관련 기술 개발과 인력양성
7.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정보보호시스템 평가 · 인증 등 정보보호 인증 · 평가 등의 실시 및 지원
8.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대책의 연구 및 보호기술의 개발 · 보급 지원
9.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지원과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의 운영
10. 광고성 정보 전송 및 인터넷광고와 관련한 고충의 상담 · 처리
11.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의 처리 · 원인분석 및 대응체계 운영
12. 「전자서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인증관리
13. 인터넷의 효율적 운영과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14. 인터넷 이용자의 저장 정보 보호 지원
15. 인터넷 관련 서비스정책 지원
16. 인터넷상에서의 이용자 보호 및 건전 정보 유통 확산 지원
17.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주소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
18.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지원
19.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7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운영지원
20. 방송통신과 관련한 국제협력 · 국외진출 및 국외홍보 지원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22. 그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터넷진흥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한 사업이나 미래창조과학부장관 · 행정자치부장관 ·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④ 인터넷진흥원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6.3.22.〉

1. 정부의 출연금

2. 제3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따른 수입금

3. 그밖에 인터넷진흥원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

⑤ 인터넷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4.22.〉

⑥ 인터넷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09.4.22.〉

⑦ 인터넷진흥원의 운영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22.〉

[전문개정 2008.6.13.]

[제목개정 2009.4.22.]

제64조(자료의 제출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관계 물품 · 서류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29., 2012.2.17., 2013.3.23.〉

1.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2. 이 법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2의2. 이용자 정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현저히 해치는 사건 · 사고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3. 그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해당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성명 ·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이용기간 등에 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

2. 제7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3. 그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에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해당 법 위반 사실과 관련한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상황,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3.29., 2013.3.23., 2016.3.22.〉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의 방법 ·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3.29., 2013.3.23.〉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한 사실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 ·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3.29., 2013.3.23.〉

⑥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 등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요구사유, 법적 근거, 제출시한 또는 열람일시, 제출 · 열람할 자료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1.3.29., 2013.3.23.〉

⑦ 제3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시작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이유 및 검사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계획을 알리지 아니한다.

⑧ 제3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할 때 성명 · 출입시간 ·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⑨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료 등을 제출받거나 열람 또는 검사한 경우에는 그 결과(조사 결과 시정조치명령 등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포함한다)를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1.3.29., 2013.3.23.〉

⑩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 및 검사 등을 위하여 인터넷진흥원의 장에게 기술적 자문을 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2011.3.29., 2013.3.23.〉

⑪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 등의 제출 요구, 열람 및 검사 등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6.13.]

제64조의2(자료 등의 보호 및 폐기)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부터 제64조에 따라 제출되거나 수집된 서류 · 자료 등에 대한 보호 요구를 받으면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3.29., 2013.3.23.〉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료의 제출 등을 받은 경우나 수집한 자료 등을 전자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 영업비밀 등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제도적 · 기술적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2013.3.23.〉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제64조에 따라 제출되거나 수집된 서류 · 자료 등을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제65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3.29., 2013.3.23.〉

1. 제64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출입검사, 시정명령 등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제64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이 청구되거나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해당 행정쟁송절차가 끝난 경우
3. 제76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이 있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이의제기기간이 끝난 경우
4. 제76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할 법원에 의한 비송사건절차가 끝난 경우

[전문개정 2008.6.13.]

제65조(권한의 위임 ·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우정청장에게 위임 ·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3.29., 2013.3.23.〉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6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 및 검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2011.3.29., 2013.3.23.〉

④ 제3항에 따른 인터넷진흥원의 직원에게는 제64조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9.4.22.〉

[전문개정 2008.6.13.]

시행령 제66조(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의 운영)

① 법 제52조제3항제9호에 따른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이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1.28.〉

1. 개인정보 침해방지 및 보호와 관련한 법 제64조제10항에 따른 기술적 자문과 그밖에 필요한 지원
2. 개인정보 침해 및 광고성 정보전송과 관련한 고충처리 및 상담
3. 개인정보 침해 관련 대책 연구
4. 개인정보 침해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업무와 관련되는 사업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하여 법 제6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한 관계 물품·서류 등의 제출요구 및 검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인터넷진흥원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09.1.28., 2010.10.1., 2011.9.29.〉

시행령 제7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법 제7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위탁한다. 〈개정 2008.3.28., 2008.7.3., 2010.10.1., 2013.3.23., 2014.11.28.〉

1.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별정통신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별정통신사업자"라 한다)
2. 법 제45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신고하여야 하는 자
3.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 등록을 한 자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법 제22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법 제6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에 관한 권한(개인정보 침해와 관련하여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접수된 사항만 해당한다)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탁한다. 〈신설 2012.8.17., 2013.3.23.〉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별정통신사업자 외의 자(제2호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법 제50조, 제50조의3부터 제50조의5까지 및 제50조의7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8.3.28., 2008.7.3., 2011.9.29., 2012.8.17., 2013.3.23., 2014.11.28.〉

1. 법 제64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명령

2. 법 제7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징수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인터넷진흥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8.3.28., 2010.10.1., 2011.9.29., 2012.8.17., 2014.11.28.〉

1. 법 제22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법 제6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에 관한 업무(개인정보 침해와 관련하여 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고충처리 및 상담사항만 해당한다)

2. 법 제50조, 제50조의3부터 제50조의5까지, 제50조의7 및 제50조의8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법 제6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에 관한 업무(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와 관련하여 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고충처리 및 상담사항만 해당한다)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4.11.28., 2015.12.22.〉

1. 법 제45조의3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의 신고

2.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

3. 법 제53조제4항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변경등록, 사업의 양도 · 양수 또는 합병 · 상속, 사업의 승계 및 사업의 휴지 · 폐지 · 해산의 신고

4.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등록취소

5.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한 약관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6.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약관변경의 권고

7. 법 제61조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 제공 거부, 정지 또는 제한의 명령

8. 법 제53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법 제6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와 검사

9.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 등록을 한 자에 대한 법 제64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명령

시행령 제7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제70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6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 등의 제출 요구, 열람, 검사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64조의3에 따른 과징금 부과 · 징수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4.8.6.]

나. 개인정보침해신고 및 상담 업무처리 절차

신고 · 상담 신청 대상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 · 상담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 및 그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대리인의 경우, 당사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신고 · 상담 신청 방법

신고 · 상담 신청은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홈페이지(http://privacy.kisa.or.kr)를 통한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편의성을 위하여 이메일 신청, 팩스 신청, 우편 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이용자가 인터넷 등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환경에 있는 경우에는 접수 담당자가 전화로 신고내용을 1차 접수하고 추후 증거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전 화 : 국번없이 118 (또는 110)
- 인터넷 : http://privacy.kisa.or.kr(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http://www.privacy.go.kr(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 이메일 : privacyclean@kisa.or.kr, 118@ksia.or.kr
- 우 편 : (05717)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35 IT벤처타워 서관 9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업무처리절차

개인정보 침해 신고는 신고인의 정확한 침해 사실관계에 대한 서술 및 증거자료 첨부 등이 요구된다. 따라서 전화로 침해신고를 받지 않고 가급적 인터넷 또는 이메일, 문서 등을 통하여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실관계 서술이 모호한 경우, 증거자료를 갖추지 못하는 경우, 침해의 내용이 신고인의 일방적 주장에 그치는 경우 등에는 개인정보 침해 신고로 접수할 수 없음을 알리고 상담으로 종결 처리될

수 있다.

개인정보 침해 신고 처리는 원칙적으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조사관에게 사건이 배정되며, 담당 조사관은 처리 가능 여부를 먼저 판단하여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업무 소관이 아닐 경우에는 해당 기관을 안내하고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보한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분쟁해결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안내할 수 있다.

담당 조사관은 자신이 배정받은 개인정보 침해 신고 사건에 대하여 피신고인(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료제출요구권 및 검사권 행사)

사실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 위법 사항이 발견된 경우, 해당 피신고인에 대해 개선 안내, 행정처분 의뢰, 수사 의뢰 등을 진행할 수 있고, 사건의 개요, 사실확인 내용, 관련 법률 검토 의견, 조치 결과등이 기재된 '개인정보침해신고사건 조사결과보고서'가 작성된다. 최종적으로 담당 조사관은 신고인에게 사실조사 결과 및 조치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업무처리 절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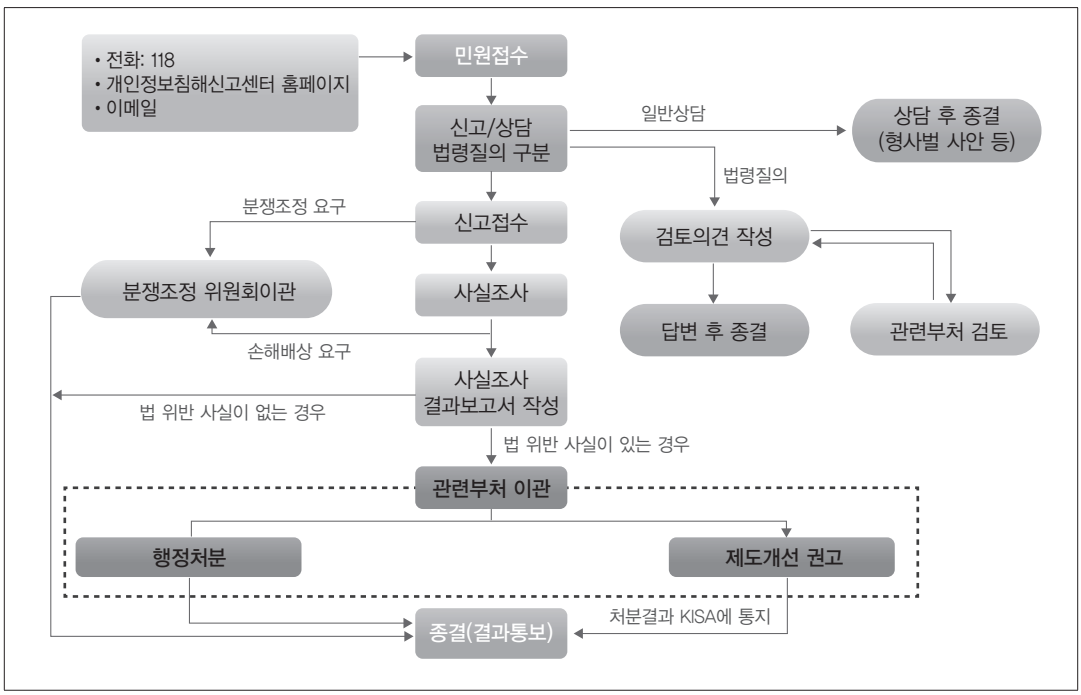

공익신고 안내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 · 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 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한다.

공익신고 접수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 · 단체 · 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 · 감독 · 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 · 공단 등 공공단체 등이다.

공익신고 업무처리 절차

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 · 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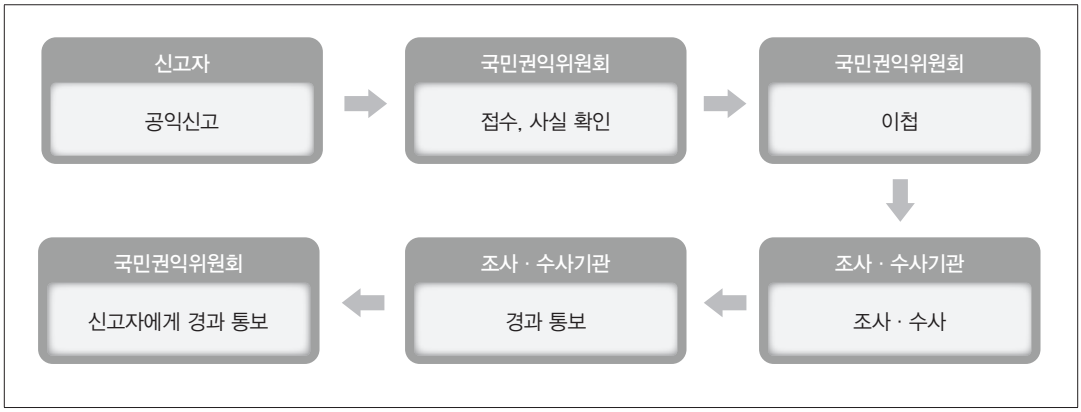

공익신고 상담 안내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공익신고하기”코너

전화 : 국번없이 110 또는 국번없이 1398

2. 개인정보 침해 신고 · 상담 접수 및 조치 현황

가. 개인정보 침해 신고 및 상담 접수 개요

| 연도별·유형별 개인정보 침해신고 및 상담 접수 현황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신 고	1,788	2,556	2,058	2,347	2,992	2,316	1,559
상 담	53,044	119,659	164,743	175,389	155,908	149,835	96,651
계	54,832	122,215	166,801	177,736	158,900	152,151	98,210

나. 개인정보침해신고 접수 유형별 분석

접수 유형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개인정보 수집 요건	1,267	1,623	3,507	2,634	3,923	2,442	2,568
개인정보 수집 시 고지 · 명시 의무	75	53	396	84	268	65	54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146	379	847	1,139	1,200	868	390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1,202	1,499	2,196	1,988	2,242	3,585	3,141
개인정보취급자에 의한 훼손 · 침해 등	158	278	941	1,022	1,036	857	622
개인정보 처리 위탁	25	36	125	44	40	22	25
영업 양도 · 양수	22	64	44	47	54	41	4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21	38	48	51	39	48	123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1,551	10,958	3,855	4,518	7,404	4,006	2,731
개인정보 미파기	323	488	779	602	686	767	545
정보주체 권리 (열람, 정정요구 등)	826	662	717	674	792	957	855
열람 · 정정을 수집보다 쉽게 해야할 조치	630	800	660	510	352	381	286
아동 개인정보 수집	35	71	47	36	33	34	33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 훼손·침해·도용	10,137	67,094	139,724	129,103	83,126	77,598	48,557
타 법 관련 개인정보 사례	38,414	38,172	12,915	35,284	57,705	60,480	38,239
계	54,832	122,215	166,801	177,736	158,900	152,151	98,210

개인정보 보호
상담 사례집

제 2 장
개인정보 침해 상담 사례

1. 개인정보의 정의
2.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3.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 제공 제한
4.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5. 개인정보의 파기
6.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7. 적용의 일부 제외
8.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등

제 2 장

개인정보 침해 상담 사례

1. 개인정보의 정의

Q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런 고지 없이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만 수집합니다.**

요즘 방송이나 신문에서 개인정보를 사업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꼭 내 개인정보가 어떻게 이용되는지 고지사항을 확인하라는 내용을 자주 보았습니다. 평소에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마구잡이로 회원가입을 하였지만 최근에는 꼭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련 고지사항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라고 하기는 좀 그런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만을 수집하고 별다른 고지 내용도 없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꼭 필요한 자료가 있어서 회원가입을 해야하는데, 해당 사이트가 개인정보 보호 법령을 잘 준수하고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A **개인정보는 개인을 특정하고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해당 개인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 하나의 정보만으로도 개인을 식별하거 특정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하거나 특정할 수 있는 아이디, 이메일 등도 개인정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만을 수집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 법령상 개인정보의 수집에 해당하므로 정보주체에게 해당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에 대해 고지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만들어야 합니다.

참고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3항 또는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

참고 판례

|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 8. 9. 선고 2013고단17 판결

경찰공무원인 피고인 甲이 피해자 乙의 신고에 따라 피고인 丙등의 도박 현장을 단속한 다음 훈방 조치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 丙으로부터 신고자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乙의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를 알려 주었다고 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휴대전화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에 전화번호 사용자의 정체성이 담기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만으로도 전화번호 사용자가 누구인지 식별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 甲이 피고인 丙에게 제공한 乙의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는 살아있는 개인인乙에 관한 정보로서 乙임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거나, 적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乙임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여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2.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Q **길거리에서 서명을 받고 있는데 타인의 개인정보가 전부 노출되고 있습니다.**

○○단체에서 쓰레기 분리 수거장 유치 반대 집회를 하면서 시민들을 상대로 홍보물을 배포하고 쓰레기 분리 수거장 유치 반대지지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평소 사회 문제에 많은 관심이 없어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데, 서명부를 보니 지지서명을 한 사람들의 이름, 주소, 연락처가 한 장에 수십개씩 적혀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면 정보주체의 동의도 받아야하고 지지서명 여부가 노출되는게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개인정보 보호법상 위반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A **민감한 내용이 타인에게 노출될 위험이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법에서 요구하는 고지항목을 알리고 명확한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또한, 사람의 사상, 신념, 정치적 견해 등에 관한 정보는 일반 개인정보와 달리 민감한 개인정보로 구분하여 별도의 동의절차 및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 ○○단체가 지지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정보주체로부터 법에서 요구하는 고지항목을 알리고, 동의를 받는 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단체가 지지서명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지지서명의 목적, 내용 등을 설명하였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에서 요구하는 고지 항목이 전부 포함되어 있고, 이를 정보주체가 명확하게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므로 법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해야할 것입니다. 또한, 사상, 신념, 정치적 견해 등은 민감정보로써 특히 위와 같은 조치를 이행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지서명부의 경우, 타인의 개인정보가 전부 노출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개별 서명 등을 통해 지지서명부에 적힌 개인정보가 유 · 노출, 오 · 남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제5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 · 신념, 노동조합 · 정당의 가입 ·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9.〉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 · 도난 · 유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 · 도난 · 유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민감정보를 처리한 자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6항 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를 분실 · 도난 · 유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

제75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3항 또는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

참고 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12진정0030600, 2012. 6. 14., 침해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 주체성을 특정 짓는 것으로써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때, 지문은 개인의 신체에 부착된 일신 전속적인 것이고 개인의 고유성이 매우 강한 바이오정보로써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할 중요하고도 본질적인기본권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또한 개인의 본질적인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는「헌법」제10조 및 제17조에서 보호하고 있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며, 본질적인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현재「주민등록법」,「출입국관리법」,「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군행형법」,「여권법」은 법률에 지문을 채취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지문등록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법」과 같이 지문채취와 관련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이 도입 · 시행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출퇴근용 지문등록시스템은 법률적 근거가 없으며, OO시의 자체 규정이나 지침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유보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

지문등록시스템 도입은 헌법 제10조와 제17조에 의거한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제한의 문제이므로, 헌법의 기본권 제한에 따르는 과잉금지의 원칙과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검토되어야 하며,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설치 및 운영이 정당화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출퇴근 확인을 위한 지문등록시스템 도입이 기본적 인권을 제한하는데 있어서 그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여부,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여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피진정인은 공익근무요원들의 지속적인 근무지 이탈 증가 등으로 복무(근태)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출퇴근용 카드(발급비용, 1개당 12,000원)분실로 인한 재발급 비용을 줄일 목적으로 2011. 10. 28.자로 OO시청 소속 공익근무요원들(130여명)에게 지문을 등록하여 출 · 퇴근 시 지문을 찍도록 하는 지문등록시스템을 도입하였다고 하므로 목적 그 자체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지문등록시스템의 도입은 공익근무요원들의 효율적인 근태관리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이런 바이오 정보에 의한 신원 확인은 카드나 종이로 된 기존신원 인식 방식에 비해 위조가 어렵고 유일성, 불변성,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 유일식별자로서 기능하므로 데이터베이스화되기 쉬운 특징을 가지고 있어 정부와 기업 등에서 선호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생명주기에 따라 수집과정에서 명확한 인식과 설명(개인정보 열람 · 정정 · 삭제 청구권) 없는 수집의 위험성, 저장관리 과정에서 해킹에 의한 유출 및 삭제, 이용 및 제공과정에서 다른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와의 결합에 따른 오 · 남용(특성, 습관, 행동, 감정추론)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원데이터의 복원이나 당사자 역추적 등도 가능하므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한편, 본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복무(근태)관리는 담당자가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이를 감독할 수가 있으며, 부득이하게출퇴근용 카드발급시스템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으므로 지문등록시스템 도입은 침해의 최소성에 맞지 않다고 판단된다.

공익근무요원들의 출퇴근 관리를 위한 지문등록시스템의 도입은 그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 적정하다하더라도 복무(근태)관리는 담당자의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을 통하여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 수집되는 정보는 정보주체의 생체정보로써 개별식별 정보이자 민감 정보에 해당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 또한 지문등록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달성하려는 복무(근태)관리 편의라는 공익에 비해 제한되는 사익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므로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에 어긋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이를 시행할 법률상의 근거가 미비하여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

3.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 제공 제한

Q **2년전에 예약한 적이 있는 ○○레스토랑에서 이벤트 문자가 수신되었습니다.**

A시에서 꽤 유명한 ○○레스토랑에 가족들과 식사를 하기 위해 ○○레스토랑 전화번호로 저녁 예약을 하였습니다. 담당 매니저 B씨가 정말 친절하여 좋은 기억이 있었으나 직장이 C시로 이전하면서 2년 넘게 ○○레스토랑을 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을 담당했던 ○○레스토랑 매니저 B씨가 ○○레스토랑에서 나와 C시에 개업을 하였다며 개업 안내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레스토랑에 저녁 식사 예약을 위해 제공한 개인정보를 B씨가 이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외로 이용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레스토랑은 식사 예약을 위해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름, 전화번호 등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다만, ○○레스토랑이 식사 예약을 위해서 수집한 개인정보이므로 식사 예약자 확인, 예약 내용 안내, 식사 제공 등의 목적에 한해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보주체가 개인정보를 제공한 목적인 식당 예약 등의 목적이 전부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 사례의 경우, ○○레스토랑은 식사 예약을 목적으로 수집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식사가 제공된 이후인 2년이 지나서도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어 개인정보 미파기가 의심되며, 개인정보 취급자라고 할 수 있는 담당 매니저 B씨가 ○○레스토랑을 퇴사하는 과정에서 예약자 명단을 무단으로 취득하여 외부로 반출한 혐의 및 이를 이용하여 식사 예약의 목적이 아닌 담당 매니저 B씨의 영업자 홍보의 목적으로 이용한 혐의가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외부로 반출하거나 수집한 목적과 다르게 이용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개인정보처리자는 항상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적절한 교육 및 관리 · 감독을 하여야 합니다.

참고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 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 · 도난 · 유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8조제1항 · 제2항, 제19조, 제26조제5항 또는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제7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59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제75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참고 판례

|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8766 판결

구 개인정보 보호법(2014.3.24.법률 제125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인정보 보호법'이라 한다)제71조 제1호는 제1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제17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나 수집한 목적 범위 내에서는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무단 제공행위 및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공받는 행위에 관하여는 제71조 제1호 ,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별도로 규제되고 처벌할 수 있는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의 의무주체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서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제17조 (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 제공 제한)등의 의무주체인 '개인정보처리자'와는 법문에서 명백히 구별되는 점, 개인정보 보호법이 금지 및 행위규범을 정할 때 일반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를 규범준수자로 하여 규율함에 따라, 제8장 보칙의 장에 따로 제59조를 두어 '개인정보처리자'외에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의무주체로 하는 금지행위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처리자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개인정보 침해행위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여 사생활의 비밀 보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의 적용대상자로서 제59조 제2호의 의무주체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제2조 제5호의 '개인정보처리자'즉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 한정되지 않고, 업무상 알게 된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를 제2조 제2호의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

4.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Q **인터넷 가입센터라는 곳에서 인터넷 가입 권유 전화를 받았습니다.**

본인들은 인터넷 가입을 대행해주는 ○○텔레콤 가입센터라면서 기존에 쓰고 있는 인터넷 서비스에 대해 업그레이드를 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텔레콤 가입센터에서 먼저 저의 이름과 저희 집 인터넷 가입년도, 회선 수 등을 말하였고, 저희 집 주소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고 있냐고 물었지만 ○○텔레콤 가입센터에서는 정확한 출처는 얼버무리며 전화통화를 종료하는데 급급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취해야할 조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파기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혹은 이동통신사라고 하며 상담사가 직접 육성으로 가입 권유전화를 한다면 텔레마케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통신사가 고객의 동의를 받고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신규 요금제 또는 서비스 안내 등을 전화로 광고하는 행위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통신서비스 관련 불법텔레마케팅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통신사의 대리점(혹은 판매점)에서 불법적으로 수집(구매)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리점(혹은 판매점)인 경우 소속, 직급을 문의하였을 때 대답을 회피하거나 발신전용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로 광고를 한다면 불법 텔레마케팅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 ○○텔레콤 가입센터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수집하였는지 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를 요구하였지만 ○○텔레콤 가입센터이 이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하지 않았으므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텔레콤 가입센터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수집 출처 요구에 법에 정한 고지 내용을 알려줘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텔레콤 가입센터는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별도의 마케팅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정보주체에게 별도로 마케팅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사용해도 되는지를 법에 정한 고지 항목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서 이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3.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 · 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정보에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제32조에 따라 등록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 중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를 정지하거나 일부를 정지하여야 한다.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처리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제75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12. 제37조제4항을 위반하여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1. 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동종의 재화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

②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참고 판례

|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 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이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아니하며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또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 · 수집 · 보관 · 처리 · 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인격적 법익을 침해 · 제한한다고 주장되는 행위의 내용이 이미 정보주체의 의사에 따라 공개된 개인정보를 그의 별도의 동의 없이 영리목적으로 수집 · 제공하였다는 것인 경우에는, 정보처리 행위로 침해될 수 있는 정보주체의 인격적 법익과 그 행위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정보처리자

등의 법적 이익이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충돌하게 된다. 이때는 정보주체가 공적인 존재인지, 개인정보의 공공성과 공익성, 원래 공개한 대상 범위,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 · 절차 · 이용형태의 상당성과 필요성, 개인정보 처리로 침해될 수 있는 이익의 성질과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 보호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정보처리 행위로 얻을 수 있는 이익 즉 정보처리자의 '알 권리'와 이를 기반으로 한 정보수용자의 '알 권리'및 표현의 자유, 정보처리자의 영업의 자유, 사회 전체의 경제적 효율성 등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비교형량 하여 어느 쪽 이익이 더 우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따라 정보처리 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하고, 단지 정보처리자에게 영리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정보처리 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2011.3.29.법률 제10465호로 제정되어 2011.9.30.부터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제15조)과 제3자 제공(제17조)에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면서도,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를 공개된 것과 공개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누어 달리 규율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정보주체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이미 공개한 개인정보는 공개 당시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이나 제3자 제공 등의 처리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동의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공개된 개인정보를 객관적으로 보아 정보주체가 동의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도 동의의 범위가 외부에 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또다시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한다면 이는 정보주체의 공개의사에도 부합하지 아니하거니와 정보주체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무의미한 동의절차를 밟기 위한 비용만을 부담시키는 결과가 된다.

다른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 는 공개된 개인정보 등을 수집 ·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개된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이러한 사후통제에 의하여 보호받게 된다.

따라서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수집 · 이용 · 제공 등 처리를 할 때는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는 불필요하다고 보아야 하고,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나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인지는 공개된 개인정보의 성격, 공개의 형태와 대상 범위, 그로부터 추단되는 정보주체의 공개 의도 내지 목적뿐만 아니라, 정보처리자의 정보제공 등 처리의 형태와 정보제공으로 공개의 대상 범위가 원래의 것과 달라졌는지, 정보제공이 정보주체의 원래의 공개 목

적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법률정보 제공 사이트를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가 ㅇㅇ대학교인 乙 대학교 ㅇㅇ대학 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丙의 사진, 성명, 성별, 출생연도, 직업, 직장, 학력, 경력 등의 개인정보를 위 법학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집하여 위 사이트 내 '법조인'항목에서 유료로 제공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영리 목적으로 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였더라도 그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정보처리를 막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보주체의 인격적 법익에 비하여 우월하므로, 甲 회사의 행위를 丙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고, 甲 회사가 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는 丙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이고, 甲 회사에 영리 목적이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으므로, 甲 회사가 丙의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나 제17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5. 개인정보의 파기

이전에 신용대출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이후부터 대출 광고 문자가 자주 옵니다.

갑자기 급하게 돈이 필요하였는데 인터넷 대출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몇가지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받고 나니 곧바로 통장으로 약간의 선이자를 제외한 금액이 입금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예전과 다르게 대출 광고 문자가 하루에도 수십개씩 수신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였는데 대출금을 기간내에 다 상환한 후에도 대출 광고 문자가 지속적으로 수신되니 조금은 불쾌하였습니다. 혹시 내 개인정보가 대부업체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거래되거나 유통되는 게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개인정보처리자는 해당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안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수집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지체 없이 파기해야합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대부업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용해야하고, 수집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파기해야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대부업자)가 정보주체가 제공한 개인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간편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되어있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알 수 없는 곳에서 대출 광고 문자를 받는다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를 요구할 수 있고, 대출금을 기간내에 다 상환한 후에도 해당 업체로부터 대출 광고 문자가 수신된다면 해당 업체에 개인정보 파기 요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대출 문자로 인한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가까운 경찰서나 경찰청 사이버안전국(http://cyberbureau.police.go.kr)에 신고하여 신속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 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

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 방침(이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제32조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5.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 · 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6.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7.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 · 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8. 그밖에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8조제1항 · 제2항, 제19조, 제26조제5항 또는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제75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참고 판례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1960 판결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1.26.법률 제8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정보통신제공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의 범위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법 제22조는 '개인정보의 수집'에 관한 규정이고, 법 제24조는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규정으로서, 법 제22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 '미리',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을 이용자에게 고지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제24조 제1항에서 말하는 ' 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의 범위 또는 약관에 명시한 범위'란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미리'고지하거나 약관에 명시한 '개인정보의 이용목적'의 범위를 말하고, 사후에 정보통신서비스이용약관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약관을 기준으로 법 제24조 제1항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피고인 甲주식회사의 임원 피고인 乙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미리'고지하거나 약관에서 명시한 '개인정보의 이용목적'의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고 하여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1.26.법률 제8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사후에 약관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약관을 기준으로 법 제24조 제1항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피고인 甲주식회사의 임원 피고인 乙이 이용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인 丙주식회사에 제공하였다고 하여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1.26.법률 제8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丙회사는 甲회사를 위하여 甲회사 일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수탁자'지위에 있어 법 제24조 에서 정한'제3자'가 아니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6.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Q **공공기관 청사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공공기관에 접수한 민원의 처리가 너무 지연이 되는 것 같아 제 민원의 담당자와 수차례 통화를 하였고, 사전 약속을 잡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안내소에 가서 공공기관에 방문하는 목적, 담당자의 이름, 연락처를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청사에 출입하려면 신분증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분증에는 주민등록번호 등 많은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타인에게 제공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안내소의 직원에서 제 신분증을 맡겨도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A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은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부 건물의 경우, 건물 출입통제 확인 등을 이유로 건물 출입 시, 신분증을 맡기고 출입증을 받아 들어간 다음, 용무를 마치고 나오면서 출입증을 반납하고 신분증을 돌려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에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는 관련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신분증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되돌려주는 행위는 주민등록번호 처리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건물 출입이나 출입증 발급 등을 목적으로 신분증을 맡기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금지 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있습니다.

참고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 · 도난 · 유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암호화 적용 대상 및 대상별 적용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와 유출 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 · 지원할 수 있다.

제75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의2.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자

4의3. 제2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참고 판례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0461 판결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2011.3.29.법률 제10465호로 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 폐지, 이하 '법'이라고 한다)제23조 제3항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처리정보 보유기관 장의 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규정(법 제10조)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누설 등 금지규정(법 제11조)위반을 전제로 처리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지 아니한 점, ② 오히려 법 제10조 , 제11조 는 처리정보 보유기관의 장 또는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의무를 규정한 것이고, 법 제23조 제3항은 처리정보 보유기관의 장 또는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법 제10조 , 제11조 의무 위반과 관계없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리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 이를 처벌함으로써 처리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못할 의무를 간접적으로 부과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점, ③ 처리정보 보유기관의 장이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

는 경우(법 제10조 제3항 각 호)와 관련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때에만 법 제23조 제3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한 정하여 해석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한 법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제23조 제3항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서는 처리정보 보유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을 수 없음에도 이를 열람 또는 제공받기 위하여 행하는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이라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처리정보 열람 또는 제공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따라서 법 제23조 제3항 위반죄는 처리정보 보유기관의 장이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경우(법제10조 제3항 각 호)와 관련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처리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때에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자"를 처벌하는 것과 별도로 같은 조 제10호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한 취지, 위 제10호 규정내용의 문언상 의미 및 개정연혁, 형벌법규의 확장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일반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는 공적 · 사적인 각종 생활분야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이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유형적인 신분증명문서를 제시하지 않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만으로 본인 여부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이 가능한 절차에서 주민등록번호 소지자의 허락 없이 마치 소지자의 허락을 얻은 것처럼 행세하거나 자신이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그 소지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를 본인 여부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이른 경우가 아닌 한 위 조항에서 정한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7. 적용의 일부 제외

Q **산악회에서 회원 비상연락망을 만들어서 배포하였습니다.**

저는 지방의 한 소도시에서 근무하다가 정년퇴직을 하고 취미삼아서 등산을 다니고 있습니다. 매일 등산을 하다보니 자연스레 자주 만나는 사람들도 생기고, 산악회에 가입 권유를 받아 ○○산악회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산악회에서는 회원 비상연락망을 손바닥 만한 크기로 만들어 100여명이 넘는 회원에게 배포하였습니다. 취미삼아 등산을 다니는 것은 좋지만 같은 산악회라고 할지라도 회원 모두가 제 개인정보를 알고 있는 것은 불편합니다. 이런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상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있으므로 ○○산악회에 개인정보 처리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동창회, 동호회 등 친목 도모를 위한 단체(자원봉사, 취미, 정치, 종교 등 공통의 관심사나 목표를 가진 사람간의 친목도로를 위한 모임)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를 받지 않고도 수집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업무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법 적용 대상자로 보고 있는데, 친목단체는 업무적 성격보다는 사적 모임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 법의 일부 적용을 배재하였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 ○○산악회는 취미삼아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친목단체로 보이며, 따라서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 법의 일부 적용이 배재되나 친목 단체의 설립 목적을 벗어난 개인정보의 이용 · 제공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인 산악회 운영진에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서를 통해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창회, 동호회 등 친목 도모를 위한 단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5조, 제30조 및 제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그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기간에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 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고충처리, 그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제32조에 따라 등록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 중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를 정지하거나 일부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하였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리정지의 요구, 처리정지의 거절, 통지 등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처리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제75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제37조제4항을 위반하여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참고 판례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2. 18. 선고 2015고정1144 판결

인터넷 신문 기자인 피고인이 뉴스 사이트에 甲에 관한 기사를 게재하면서 취재 활동 중에 알게 된 甲의 성명, 지위,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고 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1조 제5호 , 제59조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법 제2조 제5호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기 위함'이라는 요건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한 목적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와 구별되어야 하는 점(법 제2조 제1호, 제2호 에서 '개인정보'와 '처리'에 대하여도 별도로 정의하고 있다), 법 제59조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와 구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의무주체로 규정하고 있는 점, 법 제71조 제1호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를 처벌하고, 법 제71조 제2호 , 제19조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서 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가 이를 이용한 경우를 처벌하는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법 제71조 제5호 , 제59조 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법 제2조 제5호의 '개인정보처리자'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8.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등

Q **게임상에서 채팅한 사람과 다툼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모바일 메신저에서 제 개인정보(이름, 연락처)를 공개합니다.**

게임을 좋아하다보니 여러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을 자주 하다보니 게임상에서 만나 채팅을 하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는데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대화를 나누다보니 별거 아닌 것으로도 언쟁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게임상에서 대화를 나눈 사람들 중 한 사람이 같이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바일 메신저 대화창에 제 이름, 연락처, 주소, 게임 아이디, 비밀번호를 공개하고 저에게 악의적인 글을 여기저기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이를 악용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 또는 협박하는 경우,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를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개인정보파일이라 함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합니다. 따라서 일반인이 개인적으로 사회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율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공공연하게 다른 사람의 비방하거나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경우,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를 부정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또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인터넷상 게시글로 인해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사안이 발생한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권리침해신고를 통해 삭제 또는 제재 등의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7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3항 또는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 ·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 교육 · 홍보 등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
상담 사례집

제3장
개인정보 침해 상담 Q&A

※ 본 장은 행정자치부,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지침 · 고시 해설(2011.12), 행정자치부/한국인터넷진흥원, 2013년도 개인정보 보호 상담 사례집(2014. 9), 행정자치부, 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 운영 가이드라인(2015.1) 등을 인용 또는 참고하였습니다.

제 3 장

개인정보 침해 상담 Q&A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정의)

Q1 기업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하는 것도 「개인정보 보호법」상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A 법인이나 단체에 관한 정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업정보 즉, 업체명, 설립연도, 사업장주소, 주요 생산품,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의 성명 등은 개인정보로 볼 수 없으므로 별도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담당자 성명, 업무상(회사) 전화가 아닌 휴대전화 번호, 회사 이메일이 아닌 개인 이메일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동의가 필요합니다.

참고

법률상의 개인정보는 자연인(自然人)에 관한 정보만 해당됩니다. 법인(法人)이나 단체의 정보는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개인정보의 범위에는 해당되지 않음. 또한, 이미 사망하였거나 민법에 의한 실종선고 등 관계 법령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에 관한 정보는 법률상의 개인정보로 볼 수 없음.

법률상의 개인정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그 정보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하며,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다 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식별 가능하다면, 개인정보에 해당됨.

Q2 차량번호 하나만으로는 개인정보라고 볼 수 없나요?

A 구체적으로 해당 차량번호가 수집 및 이용되는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지만 차량번호 하나만으로는 개인을 식별할 여지가 없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 등과 쉽게 결합하여 등록자 개인을 식별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

주요 개념 정의

- 개인정보파일: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
- 개인정보 처리: 개인정보를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
- 정보주체: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
- 개인정보처리자: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

Q3 스마트폰에 저장된 전화번호 단독으로도 개인정보로 볼 수 있나요?

A 전화번호는 단독으로도 개인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단, 「개인정보 보호법」상 의무를 부담하는 대상(개인정보처리자)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사적인 친분관계를 위하여 스마트폰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저장하는 경우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

생존하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특정 개인을 알아볼(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식별 가능하다면 개인정보에 해당됨
- 가령, 성명 정보만 있다면 특정 개인을 식별하는 것이 쉽지 않으나(동명이인 등), 주소, 연락처 등과 결합되어 특정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로 볼 수 있음

Q4 포털사이트의 주소록에 개인이 지인의 정보를 업로드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는 행위인가요?

A '개인정보처리자'라 함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합니다.
개인이 사적인 친분관계에 있는 지인의 정보를 포털사이트 주소록에 저장하는 것은 개인적인 활동으로서 '업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판례상 업무의 개념(1)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아니하며, 일회적인 사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어느 정도 계속하여 행해지는 것이거나 혹은 그것이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 온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에 해당함(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8701 판결 등 참조)

Q5 영리법인이 아닌, 후원 · 기부재단의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대상인가요?

A 비영리법인인 기부재단에도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법이므로,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참고

판례상 업무의 개념(2)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사람의 사회생활면에 있어서의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하고, 여기에는 수행하는 직무 자체가 위험성을 갖기 때문에 안전배려를 의무의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사람의 생명 · 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내용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된다 할 것임(대법원 1988. 10. 11. 선고 88도1273 판결, 2002. 5. 31. 선고 2002도1342 판결 등 참조).

「개인정보 보호법」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Q1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중에 어느 법이 더 우선 적용되나요?**

A 「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을 우선 적용하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개인정보 보호법」의 기준보다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내용의 조문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조문별로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배제합니다. 「정보통신망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적용된다고 하여,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전체의 적용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정보통신망법」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한, 집단분쟁조정, 권리침해 중지 단체소송 등은 「정보통신망법」 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도 모두 적용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Q1 **학원에서 강의 등록을 위해 수강생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지역, 출신학교, 휴대전화 번호 등을 적으라고 하는데, 과도한 수집이 아닌가요?**

A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법령상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없이도 정보를 수집 ·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개인정보처리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합니다.

학원은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수강생 대장을 기록 · 유지하여야 합니다. 수강생 대장에는 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입원년월일, 퇴원년월일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학원 강의를 위해 수집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개인정보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 출신학교 등을 수집하는 것은 과도한 수집이 될 수 있으므로, 선택적 정보의 수집에 대해서는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선택적 정보의 제공에 대한 동의거부에 따른 학원 등록 등 당해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안 됩니다.

Q2 벌과금 등 관련한 공시송달 공고를 검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성명, 징제번호, 등기번호, 수령여부'의 사항을 포함하여 게시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되나요?

A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호에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시송달 공고는 「형사소송법」 제477조, 「국세기본법」 제11조 등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공시송달 공고"를 게시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 규정되어 공개하도록 한 항목은 공개 가능하나 공개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공개해야 합니다.

참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을 구체적으로 요구하거나 허용하고 있거나 명시적으로 규정한 조항이 없더라도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고는 법령에서 부과하는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이행하기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함

Q3 병원에 내원한 환자들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받아야 하나요?

A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병원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진료기록부에 기재할 사항으로 "진료를 받은 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병력 및 가족력, 주된 증상, 진단결과, 진료경과 및 예견, 치료내용, 진료일시분" 등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단, 연락처는 진료기록부에 기재할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진료예약, 진단 결과의

통보 등 진료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환자의 동의없이 수집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Q4 졸업앨범에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TM(텔레마케팅) 등에 활용해도 되나요?

A 공개되어 있는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당초 공개된 목적 내에서만 이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졸업앨범에 개인 연락처가 공개되어 있다면 동문간의 연락 등 졸업앨범 본래의 목적만을 위해 이용할 수 있으며, 회원의 동의를 얻지 않고 마케팅 행위 등에 이용하는 것은 공개된 목적 범위를 벗어나는 이용이 됩니다.

참고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4항

개인정보처리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 공개된 매체 또는 장소(이하 "인터넷 홈페이지등"이라 함)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도록 허용한 정보주체의 동의 의사가 명확히 표시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표시 내용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Q5 채용을 위해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퇴직하고 나서 개인정보를 20년 동안 보유한다는 것에 동의를 받으면 문제가 없나요?

A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6조에 따르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금지급, 교육, 증명서 발급, 근로자 복지제공을 위하여 근로자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별다른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보유기간을 산정하고 이를 고지 후 동의를 받는다면 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단, 개인정보 보유기간에 대한 입증책임, 즉 보유해야 하는 필수기간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Q1 **공공기관인데 감사부서나 상급기관에서 감사 목적으로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데 동의없이 제공할 수 있나요?**

A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르면,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조치를 요구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이와 같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할 수 있으며 제3자에게 제공이 가능합니다.

참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0조(자료 제출 요구) 제1항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출석 · 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 관계 서류 · 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 금고 · 창고 · 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개인정보 보호법」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Q1 **마음에 드는 여행상품이 있어 전화로 상담을 하였는데 가입신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여행사에서 계속 전화와 문자가 오는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아닌가요?**

A 만약 고객이 상품 구매나 서비스 가입의 의사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가입조건 등을 확인하는 상담만 하였을 뿐이고 이후 상품 구매나 서비스 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이는 상담이라는 최초의 개인정보 수집 · 이용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업은 상담 종료 후, 비구매자의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합니다.

단,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향후 상품계약 가능성이 있는 고객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마케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최초 개인정보 수집 시에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목적 및 보유 · 이용 기간 등에 대해 명확히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Q2 병원 진료 기록을 삭제하고 싶은데, 병원 측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제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A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되고 있고, 일정기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삭제요청이 있더라도 법에서 정한 보유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존하여야 합니다.

병원은 환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진료기록부를 작성해야 하고, 작성된 진료기록부를 최소한 10년간 보존해야 하므로 삭제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Q1 학교에서 행사에 참여하는 학생의 사진, 학교명과 이름을 팜플렛에 넣거나 학교 홈페이지에 학생들의 생활 사진이나 행사와 관련된 사진 등을 게시하게 되는데, 개별적으로 학생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A 학교는 공공기관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3호에 따라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이 가능합니다.

즉, 학생들의 정보가 학사행정에 불가피한 정보라고 한다면, 정보주체인 학생이나 또는 법

정대리인의 동의(학생이 만14세 미만일 경우) 없이 수집 ·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전 동의가 필요하므로, 가급적 입학 시에 학생들이나 법정대리인의 동의(학생이 만14세 미만일 경우)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

법정대리인이란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된 자로 미성년자의 친권자(「민법」 제909조, 제911조, 제916조, 제920조), 후견인 (「민법」 제931조~제936조),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민법」 제22조, 제23조), 상속재산관리인(「민법」 제1023조제2항, 제1053조), 유언집행자(「민법」 제1096조) 등이 이에 해당한다.

Q2 병원에 방문한 만14세 미만 아동에게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A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르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22조에서는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를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는 진료기록부에 기재할 사항으로 "진료를 받은 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병력 및 가족력, 주된 증상, 진단 결과, 진료경과 및 예견, 치료내용, 진료일시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인이나 만14세 미만 아동 모두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는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수집 · 이용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Q1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서 건강, 성생활을 민감정보로 정의하고 처리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병원에서 건강정보를 수집할 수 있나요?

A 의료기관에서 「의료법」에 근거하여 수집하는 민감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2호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동의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법에서 요구하는 이외의 사항을 수집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필요합니다.

참고

민감정보의 범위

- 개인의 가치관을 기초로 하여 형성된 사유체계, 개인이 굳게 믿고 지키고자하는 믿음 · 생각 등으로 각종 이데올로기 또는 사상적 경향, 종교적 신념 등
- 정치적 사안에 대한 입장이나 특정 정당의 지지 여부에 관한 정보
- 노동조합 또는 정당에의 가입 · 탈퇴에 관한 정보
- 개인의 과거 및 현재의 병력(病歷), 신체적 · 정신적 장애, 성적 취향 등의 정보

Q2 협회 임원 선거에 출마한 입후보자의 징계사실을 동의없이 공표하는 것이 가능하나요?

A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규정된 민감정보는 '사상 · 신념, 노동조합 · 정당의 가입 ·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입니다.
이러한 민감정보는 정보주체에게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후보자의 징계사실이 위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라면, 그 자료를 공개하도록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법령 근거가 따라서 입후보자의 징계사실이 위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라면, 그 자료를 공개하도록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법령 근거가 있는지 우선 확인하셔야 하며, 법령 근거가 없다면 정보주체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아야 공개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 운영 제한)

Q1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사무실은 공개된 장소인가요? 출입이 통제되는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출입이 통제되어 해당 사무실에 직원 등 특정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면 공개된 장소로 볼 수 없습니다. 사무실이라고 하더라도 출입이 통제되지 않아 민원인이나 불특정 다수인이 아무런 제약 없이 출입이 가능하다면 공개된 장소에 해당합니다.

비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가 적용되지 않으나 이를 통해 수집되는 영상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법 제15조가 적용됩니다.

특정인에 한하여 출입할 수 있는 사무실 등 비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촬영 범위에 포함된 모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안내판 설치나 보호조치 등은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정을 준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참고

영상정보처리기기란?

–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 · 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써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

Q2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인 세대현관 앞은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나요? 그렇다면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목적으로 설치 가능한가요?

A 누구나 드나들 수 있도록 개방된 장소는 공개된 장소에 해당합니다. 세대 현관 앞이 별도의 제재 없이 누구나 드나들 수 있다면 공개된 장소로 볼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할 경우 범죄 예방 및 수사를 목적으로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순수한 사적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 운영하는 경우

– 영상정보처리기기가 개인의 주택 내부, 개인소유의 차량 등 순수한 사적 공간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적용이 배제됨

– 예를 들어 단독주택 · 연립주택 등의 대문, 현관 등에 범죄예방(방범) 목적으로 감시용 CCTV를 설치하는 경우, 그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장소는 공개된 장소가 아니며, 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 운영하는 개인 등도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 법이 적용되지 않음

– 단, 이러한 경우에도 CCTV 각도를 최대한 주택 내부로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다른 사람들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Q3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안내에 대한 안내판 설치를 어디에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각 건물 출입구에만 설치하면 되나요? 아니면 CCTV 설치 장소에 전부 부착해야 하나요?

A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43조 제2항에서는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하며, 이 범위 내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안내판의 크기나 설치 위치는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법 제25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른 사항을 기재하여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 · 운영되고 있음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적절한 장소에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참고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예시

CCTV 설치 안내

- 설치목적: 범죄 예방 및 시설안전
- 설치장소: 출입구의 벽면/천장, 엘리베이터/ 각층의 천장
- 촬영범위: 출입구, 엘리베이터 및 각층 복도(360°회전)
- 촬영시간: 24시간 연속 촬영
- 관리책임자: 0000과 홍길동(02–000–0000)
  (설치 · 운영을 위탁한 경우)
- 수탁관리자: 0000업체 박길동(02–00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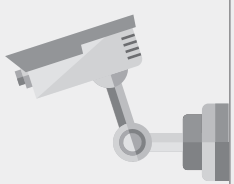

Q4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범 목적으로 가게 입구에 CCTV를 설치했는데, 촬영되는 영상을 홍보 목적으로 사용해도 될까요?

A 관련 규정과 입법취지를 고려했을 때, CCTV를 방범목적으로 적법하게 설치한다 해도, 이를 홍보 목적으로 실시간 방송하는 등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옷차림만으로도 특정인이 식별될 수 있기 때문에 손님을 촬영한 영상 공개로 인해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도 있습니다. 만약 해당 영상을 실시간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보여주려면 영상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 식별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Q1 내부 직원에 대한 교육을 외부 업체에 위탁할 때 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A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금지급, 교육, 증명서 발급, 근로자 복지 등을 위하여 근로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부 직원에 대한 교육위탁은 별도 동의는 필요하지 않지만, 위탁내용과 수탁자는 고지해야 합니다.

참고

위탁 업무 등의 공개 방법

- 위탁자의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 관보(위탁자가 공공기관인 경우로 한정한다)나 위탁자의 사업장등이 소재하는 시 · 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제2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싣는 방법
- 동일한 제호로 연 2회 이상 발행하여 정보주체에게 배포하는 간행물 · 소식지 · 홍보지 · 청구서 등에 지속적으로 싣는 방법
-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위탁자와 정보주체가 작성한 계약서 등에 실어 정보주체에게 발급하는 방법

Q2 위탁하는 업무가 1회성인 경우에도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이행해야 하나요?

A 단발성일지라도 개인정보 처리 업무위탁이 이루어진다면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관리 감독을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최종책임은 위탁자에게 있으므로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관리 · 감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안전조치의무)

Q1 비밀번호는 반드시 8자리 이상으로 설정해야 하나요?

A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5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안전하지 못한 비밀번호를 사용할 경우 정보가 노출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생일, 전화번호 등 추측하기 쉬운 숫자나 문자 등을 비밀번호로 이용하지 않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적용하여야 합니다.

이 때 비밀번호의 최소 길이는 구성하는 문자의 종류에 따라 최소 10자리 또는 8자리 이상의 길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비밀번호 작성규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

비밀번호 작성규칙

- 최소 10자리 이상: 영대문자(A~Z, 26개), 영소문자(a~z, 26개), 숫자(0~9, 10개) 및 특수문자(32개) 중 2종류 이상으로 구성
- 최소 8자리 이상: 영대문자(A~Z, 26개), 영소문자(a~z, 26개), 숫자(0~9개, 10개) 및 특수문자(32개) 중 3종류 이상으로 구성

「개인정보 보호법」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Q1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발견한 때로부터 5일 이내 해당 정보주체에게 서면, 이메일, 팩스, 전화, SMS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유출사실을 통지를 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할 사항은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입니다.

단, 1만명 이상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개인정보 유출신고서'에 따라 유출사실 신고를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사업장에 유출사항을 7일 이상 게재해야 합니다.

참고

개인정보 유출이란?

– 법령이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통제를 상실하거나 또는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것(「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6조, 개인정보의 유출)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 · 삭제)

Q1 **자동차 보험계약 만료 후, 다른 보험회사로 자동차 보험계약을 갱신하여 이전 보험회사에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였더니 불가하다고 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삭제요청을 거부할 수 있나요?**

A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삭제요구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개인정보 정정 · 삭제 결과통지서'(『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단,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정보주체의 정정 · 삭제 요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2항제11호에 의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

Q1 종교단체가 선교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나요?

A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에 따라 종교단체가 선교를 위하여 수집 · 이용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장부터 제7장까지(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 제4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제5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제6장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제7장 개인정보 단체소송)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외의 다른 규정은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하고(제3조),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허용된 권한을 초과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등의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참고

종교단체에는 개신교, 대종교, 불교, 원불교, 유교, 이슬람교, 천도교, 천주교 등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단 · 교단 · 유지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연합종교단체, 종교단체에 소속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개별단체로서 민법 제32조에 근거하여 문화관광부에 등록을 한 법인인 단체 또는 관할 시 · 군 · 구청에 종교단체로 등록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단체 등이 해당될 수 있음.

개인정보 보호
상담 사례집

참고

개인정보 보호 법령 관련 행정 해석례 자료

※ 본 자료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게재되어있는 법령해석례를 인용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개인정보 보호 법령 관련 행정 해석례 자료

음란물 제작 및 해외사이트 게시에 대해 궁금합니다.

Q1 **직접 성인만화 및 성인게임을 만들어 해외에 있는 사이트에 게시, 판매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현 시행되고 있는 음란물 유포죄 등 관련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A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정보는 아니라 할지라도 내용상 사회적 유해성이 명백한 정보에 대하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kocsc.or.kr 정부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와는 독립된 민간합의제기구입니다)에서 정보통신망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불법, 유해정보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으며, 그 심의 결과에 따라 해당정보의 차단, 삭제 등의 시정요구 및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되면 정보통신망법 제42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그 외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자에게는 청소년보호법상 각종 의무가 부여됩니다. 그 중 청소년 접근차단을 위한 성인인증관련 사항은 청소년보호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에서 해당업무를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 청소년 보호법 제7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 결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게임회사가 본인확인하는 방법을 휴대전화로 한정하고 있어요.

Q2 **내국인에서 외국인으로 외국인에서 다시 내국인으로 바뀌었는데 정보 수정을 못해준다고 하면 그럼 앞으로 게임을 하면서 그 안에서 본인인증같은 것이 이루어져야하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건 법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본인인증이 필요할시 제가 요청하면 본인인증을 실시해주라고 얘기를 해주시던가...
게임회사에서는 마이핀으로 단 한번 마지막으로 해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답변을 보내왔었는데 게임회사에서는 본인명의로 된 핸드폰으로만 본인인증이 된다고 해서 저는 지금 주민번호가 달라서 제가 저인걸 핸드폰으로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냥 법적으로 안 됩니다 이러면 제 억울함은 누가 해결해줍니까.

A

1. 정보통신망법 제30조에 따라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변경되어 정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진정한 본인인지 확인을 거쳐 지체없이 정정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정정을 요청하는 이용자가 진정한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명의도용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 상으로는 온라인 상 본인확인하는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휴대전화 본인확인, 아이핀 본인확인 등을 설정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상 휴대전화 본인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방문하여 대면 확인을 통해 확인하는 절차 등을 보충적으로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2. 게임의 경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문화부), 청소년보호법(여성가족부)에 따라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나이 및 본인 여부의 확인을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에서는 본인임을 확인하는 수단을 열거(아이핀, 휴대전화,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등)하고 이러한 수단으로 본인 및 나이 확인을 하는 경우 적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사업자에 따라 복수의 수단을 제공하기도 하고 하나의 수단만 제공하는 경우 등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본인확인 수단을 제공할 지는 사업자의 선택의 문제이며, 이를 강제할 법령의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사업자를 대상으로 어떤 본인확인 수단을 제공하라고 강제할 수는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이용자의 권리 등)

휴대폰 통신판매 구매시 신분증 요구가 정당한지 여부를 문의합니다.

Q3

휴대폰 판매점에서 아들(성년자) 휴대폰을 구입하고자 절차를 물어보니 본인 신분증을 요구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어 본인 신분 확인시 최근에는 주민번호 앞자리 생년월일만 요구하고 있습니다.(홈쇼핑이나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필요시 생년월일만 물어보고 주민번호 전체를 묻지 않고있습니다. 이 경우 휴대폰 번호 등 다른 정보를 묻고 연결 확인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반 휴대폰 대리점에서도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하여 제출한 적이 있었고 서류를 돌려받지 못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유독 휴대폰 판매대리점이나 온라인 휴대폰 통신판매업자가 반드시 신분증을 요구하는 정당한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요? 있다면 어느 법 몇조 몇항에 의한 것인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법적 근거없이 임의로 수집하는 것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벌될 수 있는지와 신분증 사본 수집이나 주민등본 등 서류 제출을 받지 않고도 휴대폰 판매업자들의 휴대폰 판매, 개통 등 업무처리를 다른 방법으로 본인확인하여 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A

1.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

이동통신사를 포함한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와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별표3]에 따라 이용자의 가입의사를 확인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분증 사본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대포폰 등 명의도용에 의한 피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본인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개통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취지입니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주민등록증의 경우 앞면만 복사하여 이통사 시스템에 전송 · 저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선 판매점에서는 별도로 보관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주민등록번호 수집 · 이용의 법적 근거

이동통신사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는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3(본인확인기관의 지정 등)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65조의2입니다. 이동통신사의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6조 참조) 정보통신망법제23조의2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1.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법령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통사는 휴대전화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아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65조의2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가능한 상태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3. 이통사의 영업점의 경우

이통사의 영업점(판매점, 대리점)은 이동통신사로부터 개인정보 취급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수탁자로써 이통사를 대신하여 가입신청서, 신분증 사본 등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통사 영업점은 휴대전화 개통업무를 종료한 후에는 신분증 사본을 포함한 고객의 개인정보 관련 서류를 고객에게 돌려주거나 지체 없이 파기해야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4. 신분증 확인 이외에 본인확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여부

오프라인 상에서 본인확인의 방법은 신분증 확인에 의한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고, 온라인 상에서 가입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면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온라인 본인확인방법(아이핀, 휴대전화 본인확인)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상에서 대포폰 등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신뢰성있는 본인확인 방법으로 신분증 확인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선 영업점에서 신분증 및 가입신청서 등 서류가 보관되지 않도록 전자청약시스템 도입, 점검 확대 등의 방안 마련을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인확인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이 최소화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관련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본인확인기관의 지정 등)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이용내역 통지 의무 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Q4

이러닝 교육을 기업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교육업체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업(A)과 저희 회사(B)는 "교육운영위탁계약"과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기업(A)이 사용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만들어 해당 기업(A) 임직원들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교육을 수강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B)는 교육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 (이름, 생년월일, 회사명, 사번, 배송주소, 이메일 등)을 해당 기업(A)으로부터 전달받고, 교육을 운영합니다.
저희 회사(B)가 해당 기업(A)을 위하여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는 "개인정보 위탁 동의"를 추가로 받고 있고, 개인정보처리방침 내 개인정보처리담당자는 해당 기업(A) 담당자로 지정/게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희 회사(B)는 보유하고 있는 해당 기업(A)의 학습자에게 별도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A

정보통신망법 제30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받은 수탁자는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전제는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한 위탁자가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여야 합니다.
기업은 자신의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위탁하면서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취급위탁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할지라도 해당 기업의 임직원은 해당 기업의 이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한 위탁자가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수탁자 또한 정보통신망법이 아닌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정보통신망법상의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는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 정보통신망법 제30조의2(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개인정보가 포함된 전임 입주자대표회의 합의서를 입주민에게 공개 가능 여부

Q5 **아파트 전임 입주자대표회의는 2004년 11월 주민동의서를 받아 ○○건설사와 고속도로 교통소음과 관련한 피해보상에 대하여 상호 합의하고 추가 민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2011년 고속도로 확장 후 소음이 증가하면서 민원이 제기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현 입주자대표회의는 전임 입주자대표회의가 합의한 합의서를 현재 입주민에게 공개하려고 합니다. 2004년 합의서에는 전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직책, 동 · 호수, 성명, 서명 및 당시 합의서에 동의한 입주자의 동 · 호수, 성명, 서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주민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합의서를 공개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A 개인정보처리자(현 입주자대표회의)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 각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2004년 합의서를 현 입주민에게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서 합의서를 공개가능한 정보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한, 입주자대표회의는 2004년 합의서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합의서에 기재된 입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 · 제공 제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입주민 개인정보 수집

Q6 **새로 이사한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서 입주민의 차량을 등록한 후 주차스티커를 발부하고 있으며, 입주민외의 주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차량등록을 하려는 입주민에게 주민등록등본과 차량등록증(사본)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에는 가족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고, 차량등록증에는 차주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서**

함부로 제출하기가 꺼려집니다. 게다가 전체 5000세대가 넘는 대단위 아파트단지여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위험이 우려됩니다.
차량등록을 위하여 입주민의 주민등록등본과 차량등록증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가 없는지요?

A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주차된 차량이 입주민의 차량인지 여부를 식별하고 필요한 연락 등을 취하기 위하여 차량 등록시 해당 입주민의 차량번호, 동 · 호수, 성명, 전화번호 등을 수집하는 것은 관리사무소와 입주자 간의 계약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입주민의 명시적 동의를 받지 않아도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할 수 있다고 볼 수 는 있으나, 단순한 차량등록을 위해 입주민 또는 가족 전체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과 차량등록증을 수집하여 관리하는 것은 업무 목적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주민등록등본이나 차량등록증을 수집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므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과 차량등록증을 입주민에게 제출받아 보관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사진과 수상내역 홈페이지 공개

Q7 **학생들이 경시대회 등에서 수상을 하는 경우 수상 정보 및 개인정보(학년, 반, 성명)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학교에서 각종 행사를 진행하면서 학부모나 외부에 알리기 위해 사진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교사들은 이렇게 공개를 하는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된다고 합니다.**
학생의 수상 정보와 사진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나요?

A 학교에서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하는 것은 학생이나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생의 수상 정보와 사진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학교에서는 원활한 학교 행정을 위하여 학기 초, 학년 초, 입학 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명시하고 각각의 사안별로 동의를 선택하도록 하는 경우라면 일괄동의가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학생의 개인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경우는 정보주체인 학생 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채용 불합격자의 지원서 보유가 채용 종료 후에도 가능한지 여부

Q8 **A사는 신입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매년 상 · 하반기에 걸쳐 채용공고를 내고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용공고 기간 동안 상당량의 입사지원서가 홈페이지와 우편을 통해 접수 되었습니다. 접수된 입사지원서를 채용 절차가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 보유해야 하는지 아니면 바로 파기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채용 불합격자의 입사지원서는 채용 절차가 종료된 후에 바로 파기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A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계약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 · 이용할 수 있으며, 목적을 달성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A사는 근로계약 체결을 위하여 입사지원서를 통해 입사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할 수 있으며 채용되지 못한 입사지원자(채용 불합격자)의 개인정보는 추가합격여부 등 채용절차가 모두 종료된 경우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므로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채용 불합격자의 개인정보를 향후 수시채용 등을 위해 일정기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용불합격자에게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A사는 추가합격 여부 등 채용절차와 관련한 처리목적이 모두 종료된 후에는 채용불합격자의 입사지원서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보험 상담 시 수집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보험가입설계서 발행에 이용 가능 여부

Q9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적합한 보험 상품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담과정에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직접 묻고 있으며, 구체적인 보험 상품 내용과 보험료 산정을 위해 상담과정에서 알게 된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보험가입설계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보험설계사가 보험가입설계를 위해 고객의 건강정보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요?

A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의 고유식별번호와 범죄경력정보, 건강정보 등의 민감정보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거나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가입설계를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자동차사고경력, 병력 등의 건강 · 질병정보의 수집 · 이용 · 제공 등의 처리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신용정보회사 등이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를 수집 · 조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개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보험업법」 제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가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를 그 정보가 필요한 보험의 계약 및 보험금 지급업무와 관련한 목적으로 이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보험설계사는 보험 상담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건강 및 질병에 관한 정보를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급여 관련 업무위탁 고지

Q10 **A사는 급여 관련 업무를 외부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급여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원의 개인정보를 수탁자인 외부업체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A사는 급여 관련 업무가 위탁되어 처리되고 있으며, 직원의 개인정보가 외부업체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직원들에게 알려야 하나요?

A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A사)는 개인정보처리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탁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사는 급여 관련 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하고, 직원의 동의 없이 업무처리에 필요한 직원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A사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내부 직원들이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내부 인트라넷(사내 망)에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직원정보 제3자 제공 관련

Q11 **회사에서 직원 및 직원 가족에게 복지차원으로 지급할 물품을 구입할 때 물품배송을 위하여 집 주소,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백화점 등 물품판매처에 제공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원 복지차원에서 직원 및 직원 가족에게 지급할 물품을 구매하고 개인정보를 물품판매업체(백화점 등)에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인 직원이나 직원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요?**

A 직원 복지 제공을 위해 물품의 구입 및 배송 등을 외부 판매업체에게 맡기는 것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 아니라 개인정보의 처리위탁에 해당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참조).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직원의 별도 동의는 필요하지 않으며, 다만 그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위탁업무의 내용, 수탁자)을 직원 들이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내부 게시판, 내부 간행물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근로자의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관한 내용은 관련 근로자에게만 공개 가능하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직원 본인 및 직원 가족 등에 대한 복리후생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원이나 직원 가족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복지기본법 제5조에 따른 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복지제공 의무(법령상 의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 참조)

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자격증 진위여부를 확인해주기 위한 개인정보 제공 요청

Q12 **A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여 자격증명시험 업무와 자격증명서 발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B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여 자격검정업무와 자격증 발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B기관은 A기관에서 수행하는 자격증 취득자에 한하여 자격검정과목 일부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B기관은 자격검정 대상자가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지와 자격증의 진위여부에 대한 확인을 A기관에 요청하였습니다. A기관은 B기관의 요청에 따라 A기관에서 발급한 자격증취득자의 자격증 진위여부를 확인해 줄 수 있나요?**

A A기관은 법에 근거하여 자격증명시험과 시험합격자의 자격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자격검정과목 면제를 위하여 자격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B기관에 알려주는 것은 A기관의 소관업무에 해당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소관업무 수행을 위하여 A기관은 자격증취득자의 동의 없이 기술자격검정 과목 면제에 필요한 자격증 진위여부를 B기관에 확인하여 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인터넷 게시판에 게재하는 경우 조치 방법

Q13 **협회에서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나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자유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홈페이지 이용자가 게시물에 자신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게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글을 삭제해야 하는지 고민이 됩니다. 개인이 본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을 작성하여 게시판에 올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홈페이지 운영자는 이용자가 작성한 게시물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노출 및 타인에 의한 도용 등 2차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게시판 안내문을 통해 게시글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작성자가 확인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있음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이 부주의하게 게재한 개인정보는 고객의 의사를 확인하여 일부 마스킹 처리하거나 개인정보 입력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필터링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홈페이지 운영자는 최대한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안전성 확보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즉, 홈페이지 이용자가 인터넷 게시판을 이용하면서 부주의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게재하지 않도록 피해가능성 등에 대한 경고문을 사전에 안내하고,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학원 강사 채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조회

Q14 **학원에서 우수 강사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강사의 학력이나 경력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아동 대상 성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서 예방을 위해 성범죄 경력 확인도 필요합니다. 학원에서 강사를 채용하기 위해 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을 받는 경우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또 성범죄 경력을 사전에 조회하고 싶은데 이 경우도 동의가 필요한지요?**

A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하여,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는 반드시 법률이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학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이에 취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은 아동 ·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3항에 따라 취업하려는 자에 대해서 성범죄 경력을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본인(학원 취업 희망자)'의 동의를 받아 수사기관에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강사를 채용하고자 하는 학원 측은 강사 지원자로부터 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을 요구하여 징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령에 수집이용 근거가 있는 경우이므로 별도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은 아동 ·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3항에 따라 취업하려는 자에 대해서 성범죄 경력을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본인(학원 취업 희망자)'의 동의를 받아 수사기관에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개인정보보호규정과 내부관리계획의 관계

Q15 **A사는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하여 회원제를 도입하고 회원가입 시 고객의 성명,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직원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회사규칙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회사규칙으로 마련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내부관리계획을 별도로 마련해야 하는지요?**

A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A사)는 개인정보가 분실 · 도난 · 유출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내부관리계획(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수립해야 합

니다. 따라서 회사규칙에 내부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의 내부관리계획을 마련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CCTV 영상을 근태관리에 활용 가능 여부

Q16

최근 일부 직원들이 업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초과근무 신청을 해놓고 외부에서 시간을 보내다 들어와 퇴근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업무에 차질이 생기고 회사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어, CCTV 영상을 활용하여 직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부정행위를 적발하고자 합니다.
시설안전, 화재예방 및 범죄예방의 목적으로 설치하여 수집한 영상정보를 근로자의 근태관리를 위해 이용할 수 있는지요?

A

CCTV는 당초 설치목적에 따라 이용되어야 하므로 당초 시설안전 등을 목적으로 설치한 CCTV를 근태관리 목적으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 감시 장비 설치를 노사 양자의 협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사협의를 통하여 근로모니터링 목적의 CCTV를 설치 · 운영할 수 있습니다.
시설안전 및 화재와 범죄예방 목적으로 설치한 CCTV에 녹화된 영상정보는 해당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하므로 근로자의 근태관리, 부정행위 감시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 운영 제한

학칙에 따라 징계처분 한 내용 공개 가능 여부

Q17 **우리 학교는 학생이 중대한 잘못을 한 경우 학칙에 따라 교내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고, 징계처분한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명의 학생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어 교내 징계위원회가 소집되었고 해당 학생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이루어 졌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학생의 성명, 소속, 징계처분의 내용을 교내 게시판을 통해 공개하려고 하는데 일부 교사들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 될 수 있다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징계처분 내용을 교내 게시판에 공개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는 것인지요?

A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해당 정보주체인 학생(학생이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가급적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징계 받은 학생의 성명, 소속, 징계처분의 내용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교내 게시판을 통해 게시하는 행위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해당하므로 해당학생,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 · 제공 제한)

전화기에 표시되는 발신번호를 이용하여 고객 전화번호 수정 가능 여부

Q18 **고객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고객이 직접 회사에 고객정보 정정을 요청하여야 원활한 서비스 제공과 고객 상담이 이루어지는데, 회사에 연락하여 자신의 정보를 정정하는 고객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여 고객과의 연락이 원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회사는 발신번호가 표시되는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기에 표시되는 고객의 발신번호가 등록된 전화번호와 다른 경우에는 고객정보를 수정하려고 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한 고객의 전화번호를 현행화하기 위하여 수정하는 경우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A 개인정보처리자(회사)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 완전성 ·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화기에 표시되는 발신번호가 고객이 실제 사용하는 전화번호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고객에게 전화번호의 변경 여부를 확인한 후 향후 변경된 전화번호로 수정하겠다는 것을 알려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가 발신번호 표시 기능을 이용하여 고객의 전화번호를 현행화하여 관리하는 경우 해당 고객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으나, 정보주체(고객)에게 이를 알려야 합니다.

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합격자 발표 시 공개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Q19 **우리 회사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채용전형과정에서 각 단계별 합격자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합격자 발표 시 입사지원자의 성명과 생년월일이 함께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그런데 입사지원자 중 한명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며, 합격자 목록에 기재된 자신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합격자를 발표하는 경우 개인정보 공개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요?**

A 합격자의 성명과 생년월일은 입사를 지원한 회사의 정보와 연계되어 개인을 알아볼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에 해당되며 합격자의 성명과 생년원일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합격자의 동의가 있거나 법령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합격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등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에게 직접 통보가 될 수 있도록 전화,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발표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하여 발표를 하는 경우에도 비밀번호 등으로 본인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불가피하게 홈페이지에 합격자 명단을 공개해야 하는 경우에는 지원자 본인만 확인할 수 있도록 응시번호 또는 수험번호만 기재하거나 성명의 일부분을 홍*동(1977. 7. 7)처럼 마스킹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 · 제공 제한)

법 시행 전 계좌를 개설한 고객 동의서 징구관련

Q20 **법 시행 전 계좌를 개설한 고객에 대하여 법 시행 후 금융 거래시 동의서 징구를 별도로 해야 하는가?**

A 법 시행 전에 금융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된 개인정보를 법 시행 이후 기존의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한다면 추가로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법 시행 전에 개설한 계좌로 법 시행 후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동의서를 징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법 시행 전에 본인 동의하에 개인정보의 제공을 포함한 계좌를 개설한 경우에도 법 시행이후 기존 목적 범위 내에서 당초 동의 받은 제공처에 제공이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계약자 이외의 가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Q21 **계약자로부터 제출받는 법정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에 계약자 이외의 가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들에 대하여 모두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요?**

A 금융기관이 실명확인에 필요한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를 수집하여 보관하는 것은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서류를 수집하여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본인 이외의 가족 정보 중 수집 근거가 없는 개인정보는 삭제하여 제출받거나 보관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이 계약자 본인 이외 가족의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받은 경우로서 해당 가족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 및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검게 칠하여 알아볼 수 없도록 한 후 보관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지요?

Q22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지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신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의 경우, 개인정보의 중요성이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현저히 부족하고, 정보 수집 목적의 진위를 평가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정보수집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동의를 하도록 규율되어 있습니다. 해당법령에 맞추어 주요 사업자들의 대응현황을 보면, 만14세 미만의 경우 회원가입을 받지 않는 구조가 대부분입니다.

게임이나 통신사이트 처럼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동의 회원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웹사이트 회원가입시 일반회원과 미성년(아동)회원 가입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으며 미성년 아동의 정보기입란과 별도로 법정대리인의 성명,연락처(휴대폰/이메일)을 기재하도록 대부분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때 법정대리인의 휴대폰번호를 이용한 모바일인증을 통해 인증번호를 생성하고 그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절차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획득이 이뤄진것으로 간주하여 프로세스가 진행된 사례들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의 회원가입 및 구매시점에 모바일인증값을 받고 아동에게 허락을 해주는 것은 그만큼 가까운 관계의 부모나 친권자의 경우 가능하다는 전제를 바탕에 두고 있는 구조입니다.

주요 통신사 웹사이트 가입시 및 온라인쇼핑몰 가입/구매 메뉴가 이런 이통사 본인확인 서비스를 이용한 인증방식으로 수행되고 있는데,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그 법정대리인으로 입력되는 사람의 정보가 만 14세 미만 아동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부모인지, 친권자인지 등...명백한 법정대리인이라는 것을 입증할수 있는 절차를 구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웹상에서 서비스이용및 구매가 발생되는 실시간 시점에서 별도의 동의획득을 마련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조건에 맞추어 상기 업체들은 제한적으로나마 모바일인증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현실적 제약을 감안하여 만14세 미만 아동의 정보처리를 위한 법정대리인동의 획득 절차 차원에서 상기 통신사 및 오픈마켓 사례와 같이 부모(법정대리인)의 모바일인증 절차로 수행하는 것에 대하여 법리적 해석과 적용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당사에서도 만14세 미만 아동과 관련된 신규 서비스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는 시점인데 명확한 가이드라인 및 적용사례등을 제안해 주시면 정보보호에 기반하여 안전하고 명확한 서비스를 구현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는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의 전자서명을 이용하는 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법정대리인이 서명날인한 서류를 제출받는 방법, 법정대리인과 직접 통화하여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하고는 있습니다.

부모의 모바일인증을 통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법정대리인으로 보기 어려움에도 아동이 제공한 정보를 기계적으로 동의를 받는 것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아동이 법정대리인의 정보를 허위로 입력하지 않도록 하는 등 법정대리인의 올바른 동의를 받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법정대리인의 권리)

집필진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김민경** 팀장
양지웅 선임연구원
김재훈 선임연구원
이유진 주임연구원
천지혜 주임연구원
전동진 주임연구원
신고조사팀 **박용균** 선임연구원
옥 별 선임연구원
118상담센터 **김다미** 리더
김현희 상담사
김보경 상담사
진세진 상담사
이지영 상담사
황혜선 상담사

개인정보 보호 상담 사례집

인 쇄 2017년 1월
발 행 2017년 1월

발행처 한국인터넷진흥원(Korean Internet & Security Agency)
주 소 서울 송파구 중대로 135 IT벤처타워
전 화 02-405-4118
제 작 호정씨앤피 (02-2277-4718)

〈비매품〉

※ 본서 내용의 무단전재를 금하며, 인용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 보호 상담 사례집」이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보호
상담 사례집

KISA 한국인터넷진흥원